

2001. 2. 19

조례안심사보고서

-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
-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

산업건설위원회

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정기시장등의 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	2001.2.8	2. 8	2. 14		지역경제 과장
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개정조례안	"	"	"	2. 14	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소장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정기시장 등의 개설방법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
- 무분별한 정기시장 등의 개설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함.

2) 주요골자

-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시설기준
 - 정기시장 등은 시장이 개설하며, 시설기준은 대지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 임시시장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.

- 시장은 정기시장 등의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위탁계약에 의하여 사회단체 또는 개인을 관리인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.
- 정기시장의 장옥을 항시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 아야 하며 사용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시장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.
- 시장은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시장 사용료를 개인이나 법인 등에 위탁 징수할 수 있다.

나.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2000년 6월 전면개정됨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를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2) 주요골자

- 법인의 지정조건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중도매인·매매참가인·산지유통인등 유통종사자에 대한 등록기준 완화(제22조, 제31조, 제33조)
- 도매시장 경매사의 임면 승인사항을 폐지
- 중도매인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최저거래 금액 상향 조정(제24조)
-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출하자의 등록 규정 신설(제34조)
- 농수산물 출하예약 출하자에 대한 우대조치 신설(제35조)
- 상장되지 않는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신설(제38조)
- 출하자의 손실보전금 확보기준 및 사용 방법 신설(제54조)
- 농산물 출하자의 규격출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하역비 법인 부담 근거 신설(제79조)
- 법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신설(제80조)
- 중도매인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과징금처분신설(제8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충주시정기시장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안

- 충주시정기시장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유통 산업 발전법 제16조에 의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상위법 저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
- 정기시장(대지 1,000㎡ 이상) 및 임시시장(300㎡ 이상) 개설할 경우 시설기준 면적을 "대지"로 하는 사유(제3조)
 - 계약이행보증금을 20/100으로 산출한 사유(제18조)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.

나.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

-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결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
- ① 도매시장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를(제10조)
 - 청과부류 5억 원과 수산부류 5억 원으로 산출한 사유
 - ② 도매시장 법인의 보증금 납부 금액은(제11조)
 -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80 이상으로 그 최저금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5,000만 원으로 상향조정
 - ③ 도매시장의 부류별 중도매인의 적정수를(제21조)
 - 청과부류에서 현행 과일 60인 이내, 채소 60인 이내를 통합하여 100명으로 하고

④ 도매시장 충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(제24조)

- 청과부류 현행 500만원(법인 3억 원)이상을 2,000만원(법인 3억 원)이상
- 수산부류 현행 500만원(법인 1억 원)이상을 1,000만원(법인 1억 원)
이상으로 상향조정

⑤ 도매시장 법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한 적립금을(제54조)

- 전년도 매출액의 1,000분의 2.5이상등 위 사항의 산출 사유 설명이 요구됨.

4. 질의.답변 요지

가.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

▶ 질의 : 충주시장 현황은?

○답변 : 상설시장이 공설, 중앙, 남부시장 등이 있으며 5일장으로는 주덕, 상모, 양성, 엄정이 있음.

▶ 질의 : 풍물시장이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지?

○답변 : 이 조례는 5일장에 적용되는 조례임.

▶ 질의 : 강원도 정선은 5일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거기도 이런 조례에 적용을 받는지?

○답변 :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명물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음.

▶ 질의 : 이 조례에 적용되는 시장은?

○답변 : 각 읍·면의 5일장이 적용됨.

▶ 질의 : 공설시장은 별도 조례가 있는지?

○답변 : 상설시장 운영조례에 적용 받음.

▶ 질의 : 우리 지역도 장옥이 있는지?

○답변 : 주덕 우시장으로 이용하던 공터를 장옥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80년 이후에는 5일장 이용객이 감소로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.

▶ 질의 :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?

○답변 : 감사원 감사시 충북 시·군이 공동으로 이 조례가 없어 지적을 받았음.

▶ 질의 : 임시시장 설치는 지목이 대시여야 가능한지?

○답변 : 지목은 상관없으며 바닥면적이 300㎡ 이상이면 가능함.

▶ 질의 : 예성공원옆 풍물시장의 조치 계획은?

○답변 : 천변도로 공사와 연계하여 3월 5일부터 재래시장으로 이전을 유도할 것임.

▶ 질의 : 상설 할인매장은 허가가 가능한지?

○답변 : 기존 상권의 보호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불허하고 있음.

나.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보증금을 20/100에서 80/100으로 상향조정한 이유는?

○답변 : 도매시장 거래금액이 상향되어 일 평균을 기준으로 인상시키는 것임.

▶ 질의 : 보증금 상향에 따른 불만의 소지는?

○답변 : 농민을 연호하는 차원에서 인상시키는 것으로 민원 발생소지 없음.

▶ 질의 : 자본금 규모가 5억 원이면 얼마나 변동되는지?

○답변 : 청주 7억, 안양 22억, 춘천은 6억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조례에는 자본금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신설하는 것임.

5. 심사결과

- 가.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 : 심사보류
- 나.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6. 붙 임

- 가.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 : 1부
- 나.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 : 1부